

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60일	
제안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		
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(전화번호:)			
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개요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명칭						
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유형		※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.				
	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(근거 법령)						
	위치						
	면적		m²				

구역 내 토지 현황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적(㎡)	등기상 대지 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
구역 내 건축물 현황	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종류	동·호수	연면적(㎡)	등기상 건축물 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아파트					
2			단독주택					
3			단독주택			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·제2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

1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
- 가. 토지이용,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
- 나.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
- 다.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.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2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
- 가. 토지이용,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
- 나.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- 다.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
- 라.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.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, 사잇도장)을 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